

#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

정명고등학교 학생안전부 <2024.3.20.(수)>

## 1 가정 폭력이란

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.



##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

- 가. 화 조절하기 :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,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,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.
- 나. 스트레스 관리하기 :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폭력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.
- 다.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: 우리나라 속담에는 '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'라는 말이 있습니다.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.
- 라. 칭찬 한마디 하기 :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.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.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.

##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

- 가.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, 신용카드, 통장,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.
- 나.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.
- 다.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.
- 라.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.

## 4 가정폭력피해 지원기관

- 가. 여성긴급전화 1366
- 나. 가정폭력상담소
- 다.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
- 라. 기타기관 : 아동보호전문기관, 노인보호전문기관, 건강가정센터, 원스톱지원센터,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

#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

정명고등학교 학생안전부 <2024.3.20.(수)>

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, 성적,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,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## 1 아동 학대 예방 방법

- 가.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한다.
- 나. 아동 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- 다.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한다.
- 라.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 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.
- 마.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로 가꾼다.

## 2 아동 학대의 유형

- 가. 신체적 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
- 나. 정서 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/정서적 위협, 감금/억제/기타 가학적인 행위
- 다. 성학대 :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
- 라. 방임 :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. 물리적 방임, 교육적 방임, 의료적 방임,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.
- 마. 유기 :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

## 3 아동 학대 대처 방법

가. 관심 갖고 이웃을 돌봐주기

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,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
-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
-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,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
-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
- 친족 성학대,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

나. 아동학대 신고 방법

- 1) 112로(또는 129, 119)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연결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.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- 2) 24시간 긴급전화 국번 없이 1577-1391 또는 129, 112, 119에 신고
- 3)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방문 및 서신